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3. 1. 17.(화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진숙 (044-202-8850)
	산업안전기준과	담당자	사무관 김상중 (044-202-8851)

도금작업에 수반되는 전·후 작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면 도금금지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- 1.17.(화) 한국경제, “무인 공장에 인력 보호시설 갖추라니...”, 도금업체의 한탄... “화학물질 다루려면 서류 137가지 내야”

-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도금작업에서 하도금 인력의 공정투입을 금지했다. 문제는 관련 부처가 도금 전·후 공정까지 '도금 작업'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빚어졌다. 유해물질 노출가능성 없는데 도금 전·후까지 모두 규제 (후략)

2. 설명 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금금지 대상은 도금작업 등 유해·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우며,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·화학물질 취급작업 등으로서

* ①도금작업, ②수은,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, 주입,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,
③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

- 장기간 추적관리와 책임규명이 어려워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내도금을 금지한 제도임

- 동 제도취지 상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에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부수작업(전처리, 마무리)이 유해·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
- 다만, 수급인 근로자가 도금작업에 이루어지는 공간과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도급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음
- 따라서, 도금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작업(전처리, 마무리)이 유해·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도급금지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

